

#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6. 29(화) 평창군수(민원봉사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4. 7. 20(화)
- 다. 상정일자 :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7.21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민원봉사과장 이경식)

### 가. 제안이유

- 주차장법(2003.12.31) 및 주차장법시행령(2004.2.9)이 개정되었으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

#### 가. 단독주택

- 건축연면적 : 173㎡ 초과 267㎡이하 : 1대  
⇒ 100㎡ 초과 150㎡이하 : 1대
- 건축연면적 267㎡ 초과인 경우는 : 1대에 267㎡ 초과하는 173㎡당 1대를 더한 대수 ⇒ 시설면적 150㎡ 초과인 경우는 : 1대에 150㎡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하는 대수

나. 기타건축물

- 시설면적 400㎡당 1대 : 시설면적 300㎡당 1대

○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비율 강화

-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종전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에서 2~4퍼센트 범위 안에서 설치토록 상향조정.

**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**

(전문위원 박태영)

○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(2004.2.9. 대통령령 제18281호)에 따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의 주차장부족과 긴급자동차의 통행 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거지역 내 쾌적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

- 부설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

「부설주차장 설치기준」(제13조 2항관련)

| 현행    |  | 개정안     |  |
|-------|--|---------|--|
| 단독주택  | ○ 건축연면적이 <u>173㎡ 초과 267㎡이하</u> : 1대<br>건축연면적 267㎡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67㎡를 초과하는 173㎡당 1대를 더한 대수 | 단독주택    | ○ 건축연면적이 <u>100㎡ 초과 150㎡이하</u> : 1대<br>○ 시설면적 150㎡ 초과 :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<br>[1+ {(시설면적-150㎡)/100㎡} ] |
| 기타건축물 | ○ 시설면적 <u>400㎡당 1대</u>   | 그밖의 건축물 | ○ 시설면적 <u>300㎡당 1대</u><br>(시설면적/300㎡)  |

「비고」(제13조 2항 표 관련)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10.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·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10.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-----장애인전용주차구획-----2퍼센트 내지 4퍼센트 범위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----- |

○ 우리군 같은 경우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,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.

○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답변요지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건물에서 떨어져 있어 타용도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대책은? | ○ 현지점검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음. |

##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##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